



(6) 圖書館 및 文庫의 設立·施設·資料 및 運營에 관한 支援을 위하여 法人·團體 및 個人이 基金·圖書館 및 文庫에 金錢 기타 財産을 寄附할 수 있도록 함(案第11條)

(7)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로 하여금 私立圖書館 및 私立文庫의 設立·運營者에 대하여 圖書館資料의 特別購買, 政府刊行物 및 公共刊行物의 優先供給 등 필요한 支援을 강구하도록 하며, 運營이 健全한 私立圖書館과 私立文庫에 대하여는 運營經費중 일부를 補助할 수 있도록 함(案第12條)

(8) 中央行政機關의 長으로 하여금 所管 政府投資機關 및 關聯團體 中에서 圖書館이 設立되지 아니한 機關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基準에 의한 文庫의 設立을 적극적으로 勸獎하도록 함(案第39條 第1項)

(9) 市長·郡守·區廳長으로 하여금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邑·面·洞 單位의 地域에 公立文庫를 設立하도록 함(案第39條 第2項)

(10) 大統領令이 定하는 규모 이상의 事業場·住居團地·建築物 및 公衆利用施設 中 圖書館이 設立되지 아니한 施設에 대하여는 私立文庫의 設立을 적극적으로 勸獎하도록 함(案第39條 第3項)

(11) 文庫는 該當 地域에 所在한 公共圖書館의 指導·支援을 받아 運營하도록 함(案第40條 第2項)

(12)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로 하여금 이 法과 다른 法律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讀書振興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도록 규정함(案 第46條, 第47條, 第48條, 第49條)

(13) 圖書館振興法은 이를 廢止함(案附則 第2條)

###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指

(專門委員：權龍太)

1993年 12月 17日자로 姜仁燮 議員 外 20人의 發議로 提出된 圖書館 및 讀書振興法案은 圖書館을 비롯한 文庫 등 讀書施設을 확충하여 일반국민에게

讀書機會를 擴大·提供하기 위하여 現行 圖書館振興法(1991. 3. 8制定, 法律 第4352號)을 廢止하고 法의 名稱을 “圖書館 및 讀書振興法”으로 바꾸어 새로운 法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이 法의 主要內容을 보면 現行 圖書館振興法에 담겨 있는 圖書館 發展을 위한 內容들을 거의 그대로 담고 있으면서, 全國에 걸쳐 文庫를 광범위하게 설치 하도록 적극 勸獎한다는 내용 的 「文庫」에 관한 章(第7章)과 國民讀書振興과 그 活性化를 위하여 「讀書振興」에 관한 章(第9章) 등 두개의 章을 追加하고 기타 條項도 文庫와 관련하여 일부 수정된 制定法案으로서 全文 54條와 附則으로 되어 있는 바, 이 法案의 主要條文을 중심으로 檢討한 意見을 말씀 드리겠음.

가. 文庫의 設立(第7章)

이 法案의 핵심부분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文庫를 設置·運營하여 일반국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책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 즉, 文庫의 設立에 관한 章을 新設하여 全國의 邑·面·洞과 一定規模 이상의 個人事業場, 住居團地, 建築物 등에 公立 또는 私立文庫를 設立할 것을 積極的으로 勸獎 도록 하고 있음(案 第39條).

우리나라의 公立 및 私立公共圖書館 現況을 보면 全國에 걸쳐 300여개에 불과하여 小都市나 面單位 마을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우리나라의 市·郡·區單位의 行政區域이 278개임을 감안할때 1個 市·郡·區에 대체로 1개의 公共圖書館 밖에 없는 實情이어서 1個 公共圖書館當 평균인구는 14만6,000여명으로 되어 있음.

또한 國民 1人當 公共圖書館 藏書數는 0.19권으로서 미국 2.93권, 日本 0.96권, 프랑스 1.18권, 덴마크 6.77권 등 주요국과 비교해서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와 같이 圖書館 施設의 絶對數 不足과 運營의 落後性, 그리고 新設에 따른 시설기간의 長期所要, 建立敷地 確保의 어려움, 일시에 많은 建立費 豫算

所要(1개관당 약 50~60億원 소요) 등을 勘案할 때, 마을 및 職場單位의 小規模 文庫를 많이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는 대부분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함.

그러나 文庫의 設立에 대해서는, 첫째, 文庫를 圖書館과는 다른 별도의 개념으로 봄으로써 圖書館 概念을 二元化하고 있음. 이 法案의 여러 곳에서 “圖書館 및 文庫”로 표현하고 있으며, 案 第2條(定義)에서 “文庫”라 함은 圖書館의 일반적인 目的과 機能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案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圖書館의 基準에 미달되는 규모의 讀書施設을 의미한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음.

둘째로 현재 全國에는 이 法에서 規定하고 있는 “文庫”와 같은 目的으로 3,400여개의 새마을文庫가 設置되어 있으며, 內務部和 地方自治團體에서 금년도('94)에 24億원의 豫算(國費 9億원, 地方費 15億원)을 이들 文庫에 支援할 豫정으로 있음.

새마을文庫는 讀書運動을 통해 會員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책을 모아 管理·運營하면서 주민들에게 讀書을 勸獎하기 위한 目的으로 1961년부터 設立되기 시작한 것임.

새마을文庫의 경우, 당초 전국에 걸쳐 3만5,000여개까지 설립되었다가 農村人口의 減少와 管理運營의 부실 등으로 3,400여개까지 줄어 들었으며, 그나마도 2,100여개 정도는 藏書 1,000권 이하의 零細性を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해서는 既存의 새마을文庫를 이 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아 이를 積極 獎勵하고, 새마을文庫는 주로 農村地域에 設立되어 있으므로(60~70% 정도) 앞으로는 이 法에 의하여 都市地域과 職場單位에 많이 設立될 수 있도록 하여 長期的으로는 文化體育部 管轄로 兩者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하나의 方案이 될 수 있을 것임.

#### 나. 讀書振興(第9章)

讀書振興은 文庫의 設立과 함께 讀書生活化, 讀書教育, “讀書의 달” 設定 등 汎國民的인 讀書運動을

펼침으로써 國民들이 책을 많이 읽도록 하려는 것임.

우리나라 國民들의 讀書實態를 보면 1인당 年間 讀書量이 2.7권으로서 日本의 12.7권, 美國의 10.8권 등 他國의 예에 비하면 극히 적은 양으로서 우리나라 國民들이 先進國에 비하여 책을 적게 읽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임.

더우기 오늘날 映像產業이 발달하면서 책을 읽기 보다는 비디오나 텔레비전을 보며 여가를 즐기고 필요한 情報을 얻으려는 경향이 있어 더욱 책을 덜 읽게 되는 것 같음.

현재 文化體育部에서도 “讀書새물결운동 5개년계획('93~'97)”을 樹立하여 직장도서관 설치, 讀書王 경연대회, 책시장 개설, 讀書캠프運營, 농·어촌에 50만권 책보내기 운동 등을 推進하고 있음.

讀書運動을 통하여 國民들이 책을 읽도록 汎社會的인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취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 讀書指導要員

案 第6條第4項에서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施設을 갖춘 文庫에는 司書職員을 두거나 讀書指導要員을 둘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으며, 第5項에서는 讀書指導要員의 資格要件을 社會教育 專門要員, 大學 또는 이와 同等以上の 學校에서 關聯學科를 卒業한 者, 教員 또는 教育·文化關聯分野의 公務員으로서 5年 이상의 經歷者, 高等學校 또는 이와 同等以上の 學校를 卒業한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教育訓練施設에서 所定の 教育過程을 履修한 者 등의 네가지를 열거하고 있음.

이는 일반적으로 圖書館에 비하여 규모가 작은 文庫에 司書職員 등에 비하여 훈련과정이나 소양의 水準이 좀더 낮은 要員을 文庫의 管理 및 讀書指導要員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음.

이에 대해 圖書館協會등 關聯團體에서는 讀書指導要員에 관한 條項(第4項 및 第5項)을 삭제하도록 주장하고 있음.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讀書指導要員의 任務는 利

用者에게 圖書를 推薦하고, 選定圖書目錄을 作成·提供하며, 圖書館과 圖書館 資料의 利用法을 指導하는 것 등인바, 이러한 일은 文獻情報學의 여러가지 必須科目을 履修한 司書職員 및 司書教師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임. 또한 현재 文獻情報學을 履修한 司書資格證 所持者가 1年 平均 2,000여명씩 배출되어 인력과잉 현상을 빚고 있는데 또 다른 教育過程을 설치하여 배출하는 것은 인력 활용면에서도 부적절하며 어려운 就業問題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同條 第4項에서 讀書指導要員을 削除하고 “司書職員등을 둘 수 있다”라고 하여 향후 施行令을 통하여 同條項의 趣旨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方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라. 圖書館 및 讀書振興基金의 設置

案 第9條에서 政府는 圖書館 및 文庫의 設立, 施設 및 資料의 擴充, 司書職員의 資質向上 및 研究, 기타 圖書館 發展과 讀書進興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圖書館 및 讀書進興基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基金의 財源은 政府出捐金, 法人·團體 또는 個人의 寄附金, 基金의 運營에서 생기는 收益金 등으로 助成토록 하고 있음.

'87年 舊圖書館法 개정시 圖書館振興基金을 처음 설치한 이후 현행의 圖書館振興法(第9條)에 이르기 까지 法에는 設置規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基金造成實績이 전혀 없는 상태임.

작년도에도 文化體育部에서 '94年 예산요구시 圖書館振興基金에 대한 出捐金으로 100億원을 요구한 바 있으나 經濟企劃院 豫算審査 과정에서 新規 基金 出捐은 억제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액 삭감된 바 있음.

지금까지 圖書館振興基金이 조성되지 못한 이유는 주로 國家豫算의 出捐에만 기대해 왔다는 점과 所管 行政部處나 圖書館界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따라서 基金의 名稱을 “圖書館振興基金”에서

“圖書館 및 讀書振興基金”으로 변경하고 同條 第3項에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收益金”을 財源으로 추가하여 出版界의 公益事業收益金 등 民間資金을 積極誘致하여 基金을 조성하겠다는 이 條項의 취지에 대해서는 異見이 없는 것으로 보임.

#### 마. 圖書館發展委員會 및 讀書振興推進委員會의 設置

現行 圖書館振興法에 의하여 이미 圖書館發展委員會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와는 별도로 讀書振興推進委員會를 구성토록 하고 있음(案 第10條第3項).

이와 같이 讀書振興推進委員會를 별도로 두려는 취지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圖書館發展委員會에서 하고 있는 圖書館 發展基本政策樹立, 基金의 管理·運用등 이외에 圖書館과 文庫의 設立·運營 및 施設의 擴充, 基金의 조성계획, 기타 圖書館政策과 讀書振興에 관하여 文化體育部長官이 부의하는 事項 등을 審議토록 추가하여 사실상 중요한 審議는 圖書館發展委員會에서 하도록 하고, 讀書振興推進委員會에서는 현재 文化體育部에서 벌이고 있는 讀書세물결 운동을 推進하기 위한 조직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目的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圖書館協會側에서는 유사한 機能을 가진 委員會를 國家次元에서 별도로 構成하는 것은 不合理하며 讀書振興運動은 이미 조직되어 있는 韓國 圖書館協會의 全國的 圖書館 組職網(1천여 기관)을 活用하여 推進하면 된다고 주장하면서 별도의 讀書振興推進委員會를 설치하는데 반대를 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는 基金에 있어서도 “圖書館 및 讀書振興基金”으로 통합 運營되는 점을 감안하여 讀書振興推進委員會를 별도로 構成하지 말고 既存의 圖書館發展委員會를 “圖書館 및 讀書進興委員會”로 명칭을 바꾸어 통합 構成·運營하는 것이 圖書館 發展과 讀書振興의 상호연계 推進에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바. 協會의 設立등

현행 圖書館振興法에 의하여 이미 圖書館協會가

設立되어 있는데, 이 法에서는 “協會의 設立等”으로 하여 圖書館協會 외에도 文庫協會등 기타 協會를 設立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음(案 第14條).

이에 따라 이 法의 附則 第5條에서는 이미 設立되어 있는 “새마을文庫中央會”를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음. 이는 향후 새마을文庫가 內務部에서 文化體育部로 移管된 후 이 法에 의해 設立되는 文庫와 통합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기 위한 것으로 보임.

文庫가 圖書館과는 별도로 設立된다면 文庫의 發展과 權益保護를 위해서는 별도로 協會를 둘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同條項의 명칭을 “圖書館協會등의 設立”으로 수정하여 이미 구성되어 있는 圖書館協會를 주축으로 圖書館 關聯協會와 會員들의 활동을 活性化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됨.

4. 質疑 및 答辯要旨

없음

5. 討論要旨

없음

6. 小委員會 審查內容

(小委員長 金基道)

가. 審查報告 要旨

讀書指導要員, 讀書振興推進委員會의 별도구성등에 대하여 相關단체간에 異見이 있는 바 讀書指導要員에 관한 規定을 삭제하고 讀書振興推進委員會는 圖書館및讀書振興推進委員會로 통합·개칭함.

나. 主要論議事項

없음

7. 修正案 要旨

가. 修正理由

圖書館및讀書振興法案의 내용중 讀書指導要員, 讀書振興推進委員會 별도구성 등 일부 條項에 대하여 相關단체간의 異見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의견을 충분히 收斂하여 立法에 반영하기 위하여 法律案 중 일부를 修正하고자 함.

나. 修正主要骨子

(1)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施設을 갖춘 文庫에 讀書指導要員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함(案 第6條第4項).

(2) 圖書館 發展과 讀書振興을 상호연계 推進하기 위하여 圖書館發展委員會와 讀書振興推進委員會를 圖書館및讀書振興委員會로 통합·개칭함(案 第10條)

(3) 圖書館 및 文庫의 상호간의 업무협력과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文化體育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圖書館協會등을 設立할 수 있도록 함(案 第14條)

(4) 公共圖書館이 모든 地域住民에 대한 圖書館奉仕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에 따라 貸出文庫를 設立할 수 있도록 함(案 第21條第3項).

(5) 公立文庫의 경우에는 該當地域에 소재한 公共圖書館의 分館으로서 運營에 대하여 公共圖書館의 指導·支援을 받도록 함(案 第40條第2項)

8. 審查結果

修正案 可決

9. 少數意見의 要旨

없음

10. 其他 必要한 事項

없음

11. 法制司法委員會 體系·字句 審查內容

若干의 體系·字句 整理가 있었음.